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방송통신위원회 |                      | 보도자료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<br>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|  |
| 보도 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. 2. 28.(화) 배포시점 | 배포 일시 | 2023. 2. 28.(화) 14:0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자정책국<br>인터넷이용자정책과  | 책임자   | 과 장                   | 최운정 (02-2110-1520)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                  | 성재식 (02-2110-1521)            |  |

## 방통위,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

- 4.6~7일 서류 접수, 6~8월 현장실사, 9월 중 지정 여부 의결 예정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‘방통위’)는 2월 28일(화) 20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.

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·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「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제3조에 따른 조치이다.

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6일(목)부터 7일(금)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.

이후 4월 중에 방통위 서류심사, 6~8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,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. 다만, 이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.

아울러,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, 법률,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.

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‘적합’ 판정을 받고,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,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.

다만, 800점 미만이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‘적합’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.

-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‘적합’ + 800점 이상 → 지정
- ②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‘부적합’ + 800점 이상·이하 → 미지정
- ③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‘적합’ + 800점 미만 →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

※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

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,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,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.

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“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.”면서 “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붙 임 ’ 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. 끝.

# '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

2023. 2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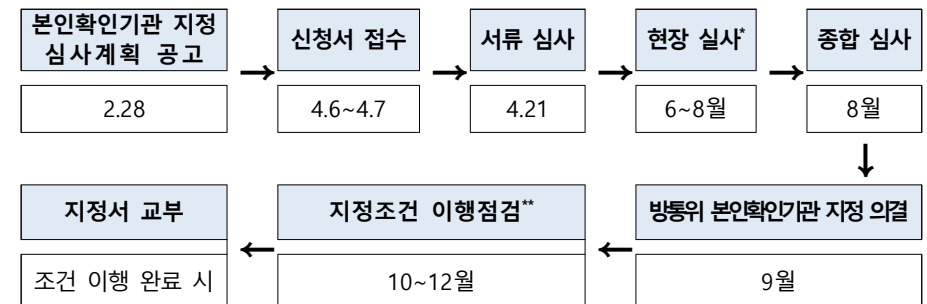
## □ 추진 배경

- 핀테크, IT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 지속 증대
-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,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'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추진

## □ 주요 경과

- 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\*」 (고시) 개정 '22. 1월  
\* 심사항목 재구성, 지정 기준 개선 등
- '22년도 본인확인기관 조건부 지정 의결(국민은행 등 4사) '22. 6월
- '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'23. 2. 3

## □ 전체 일정(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


\* 현장실사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에 따라 변경 가능

\*\* 조건부 지정 시, 방통위의 조건 이행 점검 뒤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정서 교부

## □ 신청서 접수

○ (접수일) 2023. 4. 6(목) ~ 7(금)

○ (제출서류) ①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\* ②사업계획서\*\* ③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서류 ④정관·규약 ⑤과거 3년간 주요 재무제표 및 재무수치 자료

\* 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서식 1 참조

\*\* 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별표 2(작성요령) 참조

### < 제출 서류 부수 및 작성방식 >

①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 ⇒ 1부

② 사업계획서 ③증명서류 ④정관·규약 ⑤ 재무제표 등 ⇒ 원본 1부, 사본 15부  
및 이동식 저장매체(USB) 1벌

※ 사업계획서 구성 : 사업계획서 요약문(25p 이내), 제1권(신청기관 명세, 조직, 재무), 제2권(보호조치 계획 및 설비규모)

\* 제1권, 제2권 합쳐 200쪽 넘을 수 없으며, 필요시 부속서류 제출가능

○ (제출방식)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

- 담당자 : 김계영 주무관(02-2110-1523)

##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## □ 심사위원회 구성(안)

○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15인 이내로 구성되며(세부사항 비공개), 코로나19 확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 중 교체 가능

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제1호·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2. 정부,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(협회, 조합)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
3.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
4.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
5.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※ 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자격요건

## □ 심사위원 직무

○ 서류심사, 현장실사, 종합심사에 참여하며 중요 심사항목·계량평가 항목 ‘적합’/‘부적합’ 여부 판정 및 기타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

## 4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

## □ 서류 심사

○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 3에 명시된 ‘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’에 따라 심사

## □ 현장 실사

○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신청 기관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비·설비·관련 시스템 등 실사

※ 1社당 5일이 소요되며 기관별 현장 실사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

## □ 종합 심사

○ (청문) 심사위원이 지정신청 기관의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(예 : 최고 정보보호책임자)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·응답 실시

○ (평가)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, 청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요 심사항목·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‘적합’/‘부적합’ 판정, 기타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

## 5 심사항목 및 지정 기준

○ (심사항목) 최신 기술·보안 이슈 등을 반영한 87개 심사항목으로 구성

○ (점수평가제)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(21개)과 계량평가 항목(2개)에 대해 ‘적합’ 평가를 받고,

- 나머지 심사항목(64개)에 대해 1,000점 만점에 **800점 이상** 획득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으로 '**지정**'(조건 부과 가능)
-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'**부적합**' 시 총점과 상관없이 **미지정**
-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'**적합**', 총점 **800점 미만**인 경우 **미지정(조건부 지정 가능)**

<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>

| 심사사항             | 세부 심사기준                  | 배점(점)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계획 |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    | 9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          | 220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·보안 및 관리   | 160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           | 130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         | 8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| 5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(중요심사항목)*    | 적합/<br>부적합 |
|                  | 접속정보의 위조·변조 방지           | 6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 | 60         |
| 기술적·재정적 능력       | 기술적 능력(계량평가 항목)*         | 적합/<br>부적합 |
|                  | 재정적 능력(계량평가 항목)*         | 적합/<br>부적합 |
| 설비규모의 적정성        |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·관리 및 보호 설비  | 2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대체수단 생성·발급 및 관리 설비       | 2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   | 4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        | 30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화재·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 설비    | 40         |
| 합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      |

## 6

## 심사 이후 절차

### □ 방통위 의결

-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대상 기관에 대한 본인확인 기관 지정 여부 의결(필요 시 조건 부과)

### □ 지정서 교부

- (조건이 부가된 경우) 지정대상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고,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 교부
- (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) 방통위가 지정대상 기관에 지정서 교부